



육 군 본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이첩하달)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하달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65호, '25. 7. 22.)

나. 국.예비군훈련정책과-2857('25. 9. 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호우 피해(8. 3.~14.)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합니다.

가.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한다.

나. 특별재난지역

1) 무안군 : 무안읍, 일로읍, 현경면

2) 함평군 :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

다.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1)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 해당 예비군 부대(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나

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Ⅰ형)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라. 예비군이 관련 문의 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 제5항과 본 지침을 참고하여 안내하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안내문(예문) 1부. 끝.

육 군 참 모 총 장

관인생략

수신자 지상작전사령관(예비군조직/훈련과장), 제2작전사령관(예비군훈련과장), 수도방위사령관(예비군과장), 수도군단장(예비군과장), 제1군단장(예비군과장), 제2군단장(예비군과장), 제3군단장(예비군과장), 제5군단장(예비군과장), 제7군단장(동원과장), 제17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31보병사단(동원참모), 제32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35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36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37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39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0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1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2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3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5보병사단장(동원참모), 제56보병사단장(동원참모), 동원전력사령관(훈련과장), 인사사령관(총괄운영과장), 육군교육사령관(정보/작전과장), 특수전사령관(동원과장),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교육훈련참모처장), 육군항공사령관(교육훈련과장), 육군사관학교장(계획운영처장), 육군3사관학교장(계획운영처장), 제2경비단장(작전과장), 육군군수사령관(동원과장), 지능정보기술단장(계획운영/품질과장)

중령	예비군 교육훈	2025. 9. 24.
최훈	련정책과장 노창석	동원참모부장 정학승

협조자

시행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990 (2025. 9. 24.) 접수 동원참모처-2407 (2025. 9. 25.)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다-213호 / http://hub.army.mil

전화번호 군) 9 6 0 - 5 5 4 1 , 팩스번호 02-- / ktma3438@army.mil / 비공개(6)
일)042-550-5541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